

의안번호	2208322
의 퇴 인	문진석의원
회 답 일	2025.5.26.
추 계 번호	25B0998

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어린이, 노인 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규모, 용도 및 특성에 맞는 기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고, 노후되거나 성능개선이 필요한 기계설비의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억 1,300만원, 2031년 5억 4,500만원 등 향후 5년 간 26억 1,100만원(연평균 5억 2,2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취약계층 이용 건축물 등에 대한 지원 (안 제20조의2 신설)	513	504	518	531	545	2,611	522

주: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, 향후 정부의 사업계획 수립이 확정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
1	안 제20조의2 신설 (취약계층 이용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, 안전하고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1.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, 용도 및 특성에 맞는 기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. 해당 건축물등에 설치되어 노후되거나 성능개선이 필요한 기계설비의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, 범위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
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20조의2 신설 (취약계층 이용 건축물등 에 대한 지원)	○	기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 컨설팅에 따른 소요비용(제1항제1호)과 성능개선이 필요한 노후 기계설비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에 따른 소요비용(제1항제2호)은 국토교통부의 계획안을 바탕으로 추산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에 대한 컨설팅, 노후 기계설비 개선 기술 및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, 범위,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국토교통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 추계에 필요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추계하기가 곤란하여,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추산함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어린이, 노인 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규모, 용도 및 특성에 맞는 기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소요비용과 노후되거나 성능개선이 필요한 기계설비의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지원 사업비로 구성
 - (컨설팅비용)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계획안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기관에 컨설팅 업무를 위탁할 경우 소요비용을 추산함
 - 인건비: 전담인력 1인, 보조인력 2인으로 구성, 임금과 기관부담금을 합산하여 추산
 - 자산취득비: 추계 첫 해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
- 필요인력 및 운영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계획안을 바탕으로 하며, 재원부담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고, 지방자치단체별 컨설팅 지원 계획을 알 수 없어 본 추계 금액은 전액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
- (기술 및 자금지원 사업비)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계획안을 바탕으로 매년 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재원부담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고, 지방자치단체별 취약시설 기계설비 개선 수요 등을 알 수 없어 본 추계 금액은 전액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
-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, 자산취득비, 기관부담비율 전망치 적용¹⁾ 적용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개정안 부칙과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컨설팅비용

- 국가가 어린이, 노인 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 등의 규모, 용도 및 특성에 맞는 기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필요인력 3인에 대한 인건비와 자산취득비를 합산하여 추산함
- (인건비) 전문인력 1인과 보조인력 2인에 대한 인건비는 연간 임금과 기관부담금을 합산하여 추산함
 - (임금)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(2025.4.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명목임금상승률(%)	3.2	3.9	3.8	3.8	3.8	3.8	3.8
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(천원)	6,855	6,992	7,132	7,274	7,420	7,568	7,720
공공기관 기관부담금 요율(%)	11.124	11.436	11.750	12.064	12.406	12.750	13.096
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(%)	1.9	2.0	2.0	2.0	2.0	2.0	2.0

- 전문연구원 연간임금(1인): $470,112(\text{원}) \times 20.5(\text{일}) \times 12(\text{개월}) \times \text{참여율}(0.5) \times 1\text{명}(\text{인력}) = 57,823,776\text{원}$
- 보조연구원 연간임금(2인): $247,713(\text{원}) \times 20.5(\text{일}) \times 12(\text{개월}) \times \text{참여율}(0.5) \times 2\text{명}(\text{인력}) = 60,937,398\text{원}$
- 월평균 근무일수 20.5일 적용
- (기관부담금) 임금에 공공부문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금 요율을 곱하여 추산함
- (자산취득비) 인력 3인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추계 첫 해인 2027년에 발생하며,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하여 1인당 7,132천원

[표 2] 2024년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

	기계·설비분야 평균임금(원)	비 고
기술사	470,112(1일)	인건비 단가는 1일, 참여율은 업무 강도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50%로 산정하여 계산
초급기술자	247,713(1일)	

자료: 한국엔지니어링협회(2024), “2024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조사 결과(2025년 적용)”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- 국가가 어린이, 노인 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 관련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이 추계됨

[표 3] 컨설팅 업무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인건비	임금	128	133	138	143	149	690
	기관부담금	15	16	17	17	19	86
	자산취득비	21	-	-	-	-	21
	소계	164	149	155	161	168	798

나. 노후 성능개선 기계설비 기술 및 자금지원 사업

- 노후되거나 성능개선이 필요한 기계설비의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사업계획안은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,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계획안을 바탕으로 소규모 취약시설 5개소(기계설비 기준 55개)를 매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연간 3억 3,500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
- 사업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

[표 4] 소규모 취약시설 지원사업 세부내역(안)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물량·단가	사업비
합계	소규모 취약시설 지원사업	335
○ 사업관리비용 - 선정위원회 구축 운영 - 기술자문단 구축 운영(자문비 검증 비용)	소규모 취약시설 사업관리비용	35
○ 성능점검 및 기능개선 진단 -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진단비용 - 기능개선 설계비용 및 검증비용	○ 5백만원 × 5개소 = 25백만원 - 3백만원 × 5개소 = 15백만원 - 2백만원 × 5개소 = 10백만원	25
○ 열원 및 냉난방설비 - 냉열원기기 (에어컨) - 온열원기기 (보일러) - 부대 및 연관 공사(보온설비등 포함)	○ 10백만원 × 5개소 = 50백만원 - 4백만원 × 5개소 = 20백만원 - 4백만원 × 5개소 = 20백만원 - 2백만원 × 5개소 = 10백만원	50
○ 환기설비 및 덕트 설비 - 열회수형 환기장치 - 부대 및 연관 공사	○ 20백만원 × 5개소 = 100백만원 - 15백만원 × 5개소 = 75백만원 - 5백만원 × 5개소 = 25백만원	100
○ 공기조화 설비 - 공기조화기 - 부대 및 연관 공사(보온설비등 포함)	○ 15백만원 × 5개소 = 75백만원 - 10백만원 × 5개소 = 50백만원 - 5백만원 × 5개소 = 25백만원	75
○ 위생·급수·급탕설비 등 - 절수형 위생설비 - 부대 및 연관 공사	○ 5백만원 × 5개소 = 25백만원 - 3백만원 × 5개소 = 15백만원 - 2백만원 × 5개소 = 10백만원	25
○ 신재생 에너지 설비 등 - 태양광 시스템 - 부대 및 연관 공사	○ 5백만원 × 5개소 = 25백만원 - 3백만원 × 5개소 = 15백만원 - 2백만원 × 5개소 = 10백만원	25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- 국가가 소규모 취약시설의 노후되거나 성능개선이 필요한 기계설비의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이 추계됨

[표 5] 기계설비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노후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기계설비의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	349	356	363	370	377	1,814

다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어린이, 노인 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규모, 용도 및 특성에 맞는 기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고, 노후되거나 성능개선이 필요한 기계설비의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억 1,300만원, 2031년 5억 4,500만원 등 향후 5년 간 26억 1,1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안 제20조의2 신설 (취약계층 이용 건축물 등에 대한 지원)	513	504	518	531	545	2,611

주: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, 향후 정부의 사업계획 수립이 확정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

IV. 부대의견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, 향후 정부의 사업계획 수립이 확정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